

 국토교통부		<h1>보도참고자료</h1>	
		배포일시	2019. 4. 19(금) / 총 3매(본문3)
담당 부서	공공주택추진단	담당자	• 단장 김규철, 팀장 김승범, 사무관 김수현 • ☎ (044) 201-4505, 4441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3기 신도시에 포함된 그린벨트 1, 2등급지(농지제외)는 10%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용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.

□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 평가*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,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.

*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 친화적 이용을 위하여 입지적 타당성, 환경적 가치(환경성)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나, 높은 등급의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

□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에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한 그린벨트 1, 2등급지는 전체 면적 대비 평균 10%이하입니다.

< 3기 신도시 그린벨트 1, 2등급지 비율 (총 면적대비) >

	GB 1등급지	GB 2등급지	농지제외지
합계	3%	43%	7%
남양주왕숙1	6%	46%	8%
남양주왕숙2	0.5%	39%	9%
하남교산	1%	10%	10%
인천계양	0.5%	89%	0%
과천과천	2%	62%	1%

- **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**은 표고·경사도·농업적성도·식물상·임업적성도·수질 **6개 항목**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며,
- 관계 법령*에 따라 **농업적성도 1, 2등급**지의 경우 **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에 따라 활용 가능**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

<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>

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

3-2-1. (2)표고·경사도·농업적성도·임업적성도·식물상·수질 등에 대한 환경평가 등급이 1~2등급지인 곳을 제외한 지역. 다만,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~2등급지를 포함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가. 농업적성도 1등급 내지 2등급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된 경우

- 3기 신도시 내에 포함된 **농업적성도 2등급지(1등급지 없음)**는 대부분 **비닐하우스 설치** 등으로 훼손되어 **환경적 보존가치가 낮은** 지역에 해당합니다.

* 농업적성도 등급은 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지정리 및 농지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(환경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은 아님)

< 3기 신도시 내 농업적성도 2등급지 현황 >



- 국토교통부는 지구 내 불가피하게 포함된 **환경적 보존가치가 높은 GB 1, 2등급지**에 대하여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,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지구지정 과정에서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**원형 보존 또는 공원으로 조성**하는 한편,

- GB 면적의 10~20%에 해당하는 면적을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시행하는 등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매일경제, 4.19일 인터넷) >

- 3기 신도시에 멀쩡한 그린벨트 대거 포함
 - ‘녹지 보존’ 약속 뒤집은 정부
 - “3등급 이하” 공언해놓고 1, 2등급 계양 93%, 남양주·과천도 절반 넘어서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김승범 서기관(☎ 044-201-450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